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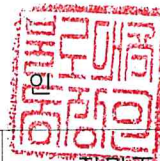
공고 제 11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2년 03월 24일

불로대곡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숙	이 *숙 1942-12-11	인천광역시 서구 도곡로245번길 (대곡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3-24

직 권 조 치 통 지 서

성명	이 용숙	생년월일	1942-12-11
주소	인천광역시 서구 도곡로245번길 22 (대곡동)	세대주의 성명	이 용숙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
2022년 03월 24일 직권조치 (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) 했음을 통지합니다.
(문의전화 : 032-718-5320 담당자 : 윤병주)

※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
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2022년 03월 24일

불로대곡동장



직 권 조 치 통 지 서 수 령 증

성명	이 용숙			생년월일	1942-12-11	
주소	인천광역시 서구 도곡로245번길 22 (대곡동)			세대주의 성명	이 용숙	
조치내용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	수령자	(서명 또는 인)		수령일	
비고						